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13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5. 21.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17.[1]자 취득세 139,931,270원(가산세 55,370,430원 포함), 지방교육세 7,029,650원(가산세 2,197,6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6,040,060(가산세 미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8. 1. 23.로 기재하였으나 2018. 1. 17.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금속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redacted]공사로부터 [redacted]시 C 9,664㎡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2013. 8. 23. 공장 건축물 6,220.1㎡ 신축하였다(이 건축물을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B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설립중의 회사인 주식회사 D과 2013. 10. 2.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D이 2013. 10. 22. 설립되었고, 2013. 11. 4.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D에게 이전등기되었다[이하 주식회사 D을 이하 '㈜D'이라 하고, 위 현물출자를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서 지분 100%를 소유하며 ㈜D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구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여, 2018. 1. 17. 원고에게 취득세 139,931,27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6,912,16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8,458,270원 포함), 지방교육세 7,029,65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197,6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787,0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747,010원 포함) 합계 155,747,99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8. 1. 위와 같이 부과된 세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747,010원 부분만을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8. 8. 8. 위 결정에 따라 위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위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전환 후에도 원고는 위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자이므로, 위 현물출자를 구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구 지특법 추징조항'이라 한다)의 '매각'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개인기업 B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사업을 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왔고, 개인기업 B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D을 설립한 후에도 기존의 용도와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으로서 위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본문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위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제120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제3항 단서에 의한 추징을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현물출자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즉 ① 원고의 매출 100%를 차지하는 발주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2014년 말까지의 거래업체 법인화 요청 및 방침에 따라 원고는 개인기업 B을 법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② 개인기업 B과 ㈜D은 생산품목, 거래업체, 임직원 및 조직, 경영자, 공장 및 생산설비 등에서 차이가 없고 위 건축물은 개인기업 B과 ㈜D 모두에서 공장으로서 고유 업무에 사용되어 당초 취득세가 면제된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 2016. 12. 27. 개정으로 신설된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은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의 경우 취득세 추징을 제외하고 있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과세형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원고는 개인기업 B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당국의 유권해석[세정13407-174(2003. 3. 5.) 기타] 및 심판결정례[지방세심사2006-33(2006. 1. 23.) 등록면허세]에 따라 위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추징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과세관청의 과거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에 의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이 사건 현물출자가 구 지특법 추징조항의 매각에 해당하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이 사건 현물출자는 유상처분인 점에서 매도, 교환 등과 다를 것이 없고 그 대가로 배정받은 주식이나 지분도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여 매각과 실질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현물출자는 구 지특법 추징조항의 '매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5헌바2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원고와 ㈜D은 별개의 인격을 갖는 권리주체인 이상 원고가 ㈜D의 1인 주주라고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현물출자는 구 지특법 추징조항에서 정하는 '매각'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현물출자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 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은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의한 것이지만, 만약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항 단서에 의한 추징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구 조특법 규정에 의한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구 지특법 추징조항에 의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보기로 한다.

2)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직접 사용'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용 재산을 취득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도 보았듯이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하여 원고와 별개의 인격을 갖는 법인인 ㈜D이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는 위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리고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주된 거래처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D을 설립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일단 원고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이므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축물을 매각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겨우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취득 당시 이미 B의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법인 전환을 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지고 B이 위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위 건축물을 B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였으며 거기에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 조특법 제120조 본문에 의한 감경 요건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것 없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지특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중 75/100를 경감받은 후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그 부칙 제18조는 위 단서 규정이 위 법 시행 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러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현물출자에 위 단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위 단서 규정이 같은 조 제1항(개정 전의 규정 포함)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의 75/100 상당액의 추징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은 것이다) 그 법인전환에 관하여 조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요구하는 등 그 적용의 전제가 이 사건 현물출자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현물출자에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창업중소기업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일반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설정은

판사 강성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9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